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4023
----------	------

제안연월일 : 2016. 11.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전체회의 상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1호	정부	'16.6.21.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16.11.16.)
	제468호	유은혜의원	'16.6.24.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16.11.16.)
	제1967호	송기석의원	'16.8.31.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16.11.16.)

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2016.11.21.)

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1.2

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음.

이에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고, 2014년 전체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음.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3. 주요내용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1조제1항),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제64조제1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으로 한다.

제3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제64조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② ~ ⑩ (생략)</p> <p>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생략)</p> <p>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 ⑥ (생략)</p> <p><신설></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p> <p>-----</p> <p>-----</p> <p>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p>

<신 설>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생략)

<신 설>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현행 제목 외 부분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제64조(벌칙) <신 설>

① · ② (생략)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